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523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998호	김영호의원	2025.12.8.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2.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3.12) 상정
	제2080호	조정훈의원	2024.7.22.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7584호	김영호의원	2026.3.18.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3차 법안심사소위 직접 회부(2026.3.20.)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3.17.)에서 김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하여 의결함.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3.23.)에서 조정훈의원, 김영호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6.3.24.)는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실태조사에 더하여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표하여야”를 “평가하여 공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실태조사를”을 “실태조사 또는 평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사의”를 “조사 또는 평가의”로, “조사에”를 “조사 또는 평가에”로 한다.

제4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실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3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조사 또는 평가의-----  
-----조사 또는  
평가에-----  
-----.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  
중재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  
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  
립·실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  
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  
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  
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  
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제2항  
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3  
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